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91
----------	-------

발의연월일 : 2026. 6. 16.

발 의 자 : 이기현 · 김남근 · 박지원  
이재관 · 윤건영 · 권향엽  
박해철 · 한정애 · 이용우  
임미애 · 허성무 · 최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로 국내외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국내외 박물관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국내 다른 박물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업무 협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박물관은 그 사업을 담당하는 학예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등급 및 자격요건 등 학예사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K-컬처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국외 박물관의 한국실 운영에 대한 협력 요청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박물관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기관 운영 근거가 미비하여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실정임.

이에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에 국외 박물관 한국실 설치·운영 지원 및 국외 전시 개최 등 국외 박물관과의 교류·협력, 학예사 자격제

도의 운영 및 전문인력 교육훈련 기관의 운영을 포함함으로써 K-컬처 확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박물관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구성 및 운영”을 “구성·운영 및 지역문화의 확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3항 각 호의”를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3항 각 호의”를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로 한다.

5. 국내 박물관자료에 대한 데이터 표준화 및 디지털 전환
6. 국외 박물관의 한국실 설치·운영 지원 및 국외 전시 개최 등 국외 박물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제6조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제도의 운영 및 전문인력 교육훈련 기관의 운영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설립과 운영) ① · ② (생략)</p> <p>③ 국립중앙박물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 3. (생략)</p> <p>4. 국내 박물관 협력망의 <u>구성 및 운영</u> <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5. (생략)</p> <p>④ (생략)</p> <p>⑤ 국립현대미술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u>제3항 각 호의</u>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p>	<p>제10조(설립과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구성</u> <u>· 운영 및 지역문화의 확산</u></p> <p>5. <u>국내 박물관자료에 대한 데이터 표준화 및 디지털 전환</u></p> <p>6. <u>국외 박물관의 한국실 설치</u> <u>· 운영 지원 및 국외 전시 개최 등 국외 박물관과의 교류 및 협력</u></p> <p>7. <u>제6조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제도의 운영 및 전문인력 교육훈련 기관의 운영</u></p> <p>8.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u>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u>----- -----.</p>

⑥ 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에 관하여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민속 박물관”으로 본다.

⑦ · ⑧ (생략)

-----.

⑥ -----

-----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

-----.

⑦ · ⑧ (현행과 같음)